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요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3.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 나. 이러한 배경 하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9)과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9)이 각각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음.
-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라.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임무 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2조)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특수임무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일 지라도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수임무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특수임무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특수임무 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다른 조례 또는 규정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유족 등의 범위) - 제6조(등록 및 결정) -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족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성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

-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유족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4.>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 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지원대상) 특수임무유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거주
 - 제4조(특수임무 명예수당 등) 수당지급액 월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 조례에 명시한 특수임무명예수당(가칭) 지급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2014. 8월말 기준) (단위 : 명)			
대 상 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383	293(102)	90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	2	0	2
특수임무부상자	70	68(32)	2
특수임무공로자	311	225(70)	86

※ ()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나. 추계 결과

- 연간 총소요액 : 68,400천원
 - 산출 기초 : 102명(인천보훈지청, 2014. 8월말 기준)
 - ☞ 수당 : 102명 × 12개월 × 50,000원 = 61,200천원
 - ☞ 사망위로금 : 3명 × 12개월 × 200,000원 = 7,200천원
(※ 사망위로금 3명은 월별 추정 사망자임)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육위원회 구재용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68,400	70,000	70,000	70,000	70,000	348,400
	소계	68,400	70,000	70,000	70,000	70,000	348,400
재원 조달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국 비							
시비	소 계	68,400	70,000	70,000	70,000	70,000	348,400
	일반회계	68,400	70,000	70,000	70,000	70,000	348,4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